

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38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3. 12. 18 재준호의원 외 8인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2. 18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2. 24 의회운영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8161호; 2003.12.18)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코자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의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 550,000원에서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로 900,000원, 보조활동비로 200,000원을 지급토록 개정
(안 제2조제1항)
- 나. 의회의원의 공무 여행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중 숙박비와, 국외여비 지급 기준중 일비 및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
(안 별표1, 별표2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12.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